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39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 박홍배·김현정·김한규

강훈식 · 홍기원 · 박희승

백혜련 · 김정호 · 안호영

염태영 · 민병덕 · 장경태

강준혁 · 서영교 · 서영석

이재정 · 김민석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 항).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인력·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			
원을 요청하는 경우 <u>이를 지원</u>	<u>인력·기</u>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술 등의 지원을</u>		
	이 경우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